

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(안)】

영 주 시

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
제출자 : 영주시장

1. 개정이유

공설시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 함(안 제7조제1항)
- 나. 휴업금지 조항을 폐지 함(안 제13조)
- 다. 용도폐지된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를 각각 삭제 함(안 【별표1】)

3. 개정조례 (안)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증개정조례(안)

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7조제1항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,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18조중 “제10조 제8호”를 “제12조 제8호”로 한다

【별표 1】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 중 풍기공설시장란 내지 부석공설시장란을 각각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【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】

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의 안

- 의안번호 : 제155호
- 의 안 명 :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- 해당부서 :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

2. 제안이유

공설시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 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 함 (안 제7조제1항)
- 나. 휴업금지 조항을 폐지함 (안 제13조)
- 다. 용도폐지된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를 각각 삭제함 (안 【별표1】)

4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
- 안 제7조제1항은 공설시장사용허가신청서 작성시 불필요한 기재 사항을 삭제하여 신청을 간소화하는 안이며,
- 현행 조례 제13조(휴업의 금지)는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삭제하는 안이며,
- 【별표1】의 3개공설시장은 용도폐지되어 삭제하는 안으로
- 경상북도 기획 11250-10050(2000. 4. 3.)호에 의해 시달된 지방 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 의거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고,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설 시장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안으로,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

2000. 11.

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